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성체분배자회	3월 23일(월) 19:40	성체조배실
자녀를 위한 기도	4월 3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4월 4일(토) 17:30	강당

알림

- 3월 22일(일) 오후 1시10분 레지오 전단원 아치에스 행사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 3월 27일(금)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집중판공 성사가 있습니다.
- 3월 29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서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4월 3일(금)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로서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3/30(월)		3/31(화)		4/1(수)
11구역		12구역		13구역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첫모임 : 3월 29일(일) 9시 1교리실
- 세례식 : 2026년 10월 예정
- 신청 : 본당 사무실

사순 영화 상영

일시	제목
3월 30일(월) 19:40	체코의 단편영화 "MOST"

부활맞이 대청소 (3/28)

성주간 전례 일정 안내

4월 2일(목)	저녁 8시	주님 만찬 미사
4월 3일(금) 금욕, 금식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저녁 8시	주님 수난 예식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4일(토)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실천 봉헌 카드 제출)
4월 5일(일) 부활 대축일	06:30, 10:30(교중), 18:00, 21:00 ※ 오후 12시, 중고등부, 오후 3시, 유초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 * 성삼일(4월2일~4일)동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 부활절 행사 관계로 4월 4일(토) 오후 1시부터 4월 5일(일) 오후 5시까지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성(3월 11일 ~ 3월 17일)

- 교무금 6,475,000원
- 주일헌금 현금 5,279,500원
신자애퍼 15,000원
- 감사헌금 꿀벌유치원2만원 최정미5만원 지현주5만원
서만심10만원 김숙경 5만원 이한풍10만원
홍연실10만원 6구역 5만원 이석구10만원
- 물품 박일혜 쌀30Kg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3/22	임종남	장희석 임종윤	안상록 정연희
3/29	신영옥	김영균 이치현	임종윤 손정주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3/22	박용환	김영균	조홍환 도현만
3/29	옥윤필	김용진	하재민 박용환

성가번호 ♪ 입당 : 124 ♪ 예물준비 : 217, 512 ♪ 영성체 : 174, 179 ♪ 파견 : 280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있고 풍요로운 구원이있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3 장 그 밖의 경배

제 3 절 재 계

제 136 조 (금식재와 금육재)

1항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조 참조).

2항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제 3 편 사 목

제 1 장 교 구

제 137 조 (정 의)

1항 교구는 교구장이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교회법 제369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8항 참조).

2항 교구는 단위 교회로서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변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재하고 활동하는 곳이다(교회법 제369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8.9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39-45항 참조).

제 138 조 (교구청)

1항 교구청은 특히 사목활동의 지도, 교구 행정의 관리, 사법권의 행사 등 교구 전체의 통치에 관하여 교구장을 보필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교회법 제469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6항 참조).

2항 교구청 행정 부서 설치 및 행정 실무자 업무 분장 내용은 각교구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2-36항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